

특별조건부특약

약관

특별조건부특약 약관

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

제1조 (목적)

이 특약은 보험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(이하 '회사'라 합니다) 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에 부가됩니다 (이하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된 보험계약 또는 특약을 '해당 계약'이라 합니다)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,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계약관계 관련 용어
 - 가. 주피보험자 : 피보험자 2명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.
2.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
 - 가. 해약환급금 :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.
3.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
 - 가. 보험기간 :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.

제2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

제3조 (특약의 체결 및 소멸)

- ① 이 특약은 해당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(請約)과

회사의 승낙(承諾)으로 해당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.

- ② 해당계약이 해지(解止)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.

제4조 (피보험자의 범위)

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해당계약이 1명보장보험일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로, 해당계약이 2명보장보험일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.

제5조 (특약의 내용)

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보험가입이 어려울 경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.

제6조 (특약부가의 조건)

- ① 이 특약을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,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 가지의 방법으로 정합니다.

1. 할증보험료법

계약을 체결할 때 할증위험률(割増危険率)(해당계약 보험기간 이내의 일정기간 할증 포함)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와 표준체(標準體) 보험료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특약보험료를 정하고 표준체 보험료에 이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하는 방법입니다.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
[표준체]

신체적 또는 도덕적 위험 등 여러 가지로 보아 뚜렷한 결

점이 없어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의 할증 및 보험금의 감액 등이 없는 정해진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.

2. 보험금감액법

계약일부터 회사에서 정하는 삭감기간(削減期間) 내에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 약관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.

경과기간	기준	삭감 기간				
		1년	2년	3년	4년	5년
1년미만	해당계약에서 정한 지급보험금	50%	30%	25%	20%	15%
1년이상 2년미만			60%	50%	40%	30%
2년이상 3년미만				75%	60%	45%
3년이상 4년미만					80%	60%
4년이상 5년미만						80%

그러나 해당계약에서 정한 재해(이하 “재해”라 합니다)로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합니다. 이 경우 계약자는 표준체 보험료를 납입하며 특약보험료는 없습니다.

3. 연령가산법

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연령간의 차이를 연증수(年增數)라 합니다.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의 위험지수(危險指數)가 실제 n세 높은 연령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“n년증” 이라 칭하고 n세 높은 연령의 표준체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.

4. 연령가산법(또는 할증보험료법)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(併

用)할 수 있습니다.

- ②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.

제7조 (특약내용의 변경 등)

-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해당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.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표기하여 드립니다.
- ② 제1항 및 해당계약 약관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.
 - 1. 보험종목 및 보험기간의 변경
 - 2.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
 - 3. 감액완납보험(해당계약 보험기간 이내의 일정기간 할증에 한함) 또는 연장정기보험으로의 변경

[감액완납보험]

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대신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조건은 변경하지 않고 보험가입금액만 감액하는 보험을 말합니다.

- ③ 계약자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이 특약도 동일 내용으로 감액하여 드립니다. 이때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(解止)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제12조(해약환급금)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 다만, 해당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.

제8조 (특약의 보험기간)

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.

제3관 보험료의 납입

제9조 (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)

-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해당 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,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.
- ② 해당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.
-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해당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.

제10조 (해지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)

-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계약 약관의 부활(효력회복) 절차에 따라서 해당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(효력회복)을 취급합니다.
- ② 이 특약을 부활(효력회복)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9조(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) 제3항을 따릅니다.

제4관 특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

제11조 (계약자의 임의해지)

계약자는 해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계약과 함께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을 단독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. 해당계약의 해지로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12조 (해약환급금)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
제12조 (해약환급금)

-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“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”에 따라 계산합니다.
다만, 제6조(특약부가의 조건)에서 정한 부가 계약조건 중 보험금감액법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으며, 연령가산법의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 부가로 할증(n년증)된 표준체 보험료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.

제5관 기타사항 등

제13조 (해당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)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계약 약관을 적용합니다.